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24.

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9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**장 예 순**

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 그

본 안건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 (안 제7조).
- 나.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13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「지방재정법」이 네 개의 법으로 분법되면서 2005. 8. 4일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제정되고, 2006. 11. 10일에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가 개정되는 등 관계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,
-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,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,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